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 민간투자시설사업

2차 실시협약 변경

2007. 12. 26

건 설 교 통 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차 실시협약 변경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그 기본 취지에 입각하여 2000년 12월 14일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원의 발생 등으로 사패산터널구간(송추IC~의정부IC)의 공사중단(2001년 11월~2003년 12월)에 따른 사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실시협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2004년 6월 23일자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변경실시협약이라 함).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협약”이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제1단계 개통구간을 2006년 6월 30일자로 개통하였으며, 2단계 개통구간의 공사기간을 당초 84개월에서 6개월 단축함으로써 2007년 12월 조기준공하게 되었다.

이에 협약당사자는 1단계 개통구간에 대한 운영개시일로부터 18개월간 징수할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총사업비, 물가변동비, 통행요금 체계 및 통행료 조정, 조기준공기간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변경 등 제반 변경여건을 실시협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6일 다음과 같이 2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관한 사항)

◇ 실시협약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총사업비는 부록2와 같이 1999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14,712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 금4,236억원을 제외한 금10,476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제 2 조 (공사비에 관한 사항)

◇ 실시협약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공사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역서를  하여 산출하되, 부록2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99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13,674억원으로 한다.”

제 3 조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 실시협약 제3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단계구간 6개월 조기준공에 따라 증가하는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1999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7,492억원으로 한다.”

제 4 조 (2차 변경실시협약의 효력)

- ① 이 2차 변경실시협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 2차 변경실시협약의 효력 발생 이후에는“본 협약”, “실시협약”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은 이 2차 변경실시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실시협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종전의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첨부 : 부록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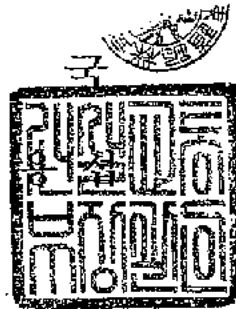
이 2차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2007년 12월 26일 이 2차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7년 12월 26일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장관 이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하석

